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17. 2. 3.>

승강기 [ ]검사 / [ ]재검사 연기 신청서

※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5일

상호 또는 명칭

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사무소 소재지	사무소 전화번호
사업소 소재지	사업소 전화번호

	승강기 종류 및 용도	승강기 고유번호(ID)	검사유효기간만료일	①검사연기사유코드
연기 대상 승강기				

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
유의사항

①란에는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코드를 기입하여야 합니다.

1. 승강기 설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승강기의 정상적 운행 불가
2.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운행 중단
3.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승강기의 정상적 운행 불가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현지조사(필요시) 또는 검토·확인	→	기안 및 결재	→	회 신
신청인		시·도 (승강기담당부서)		시·도 (승강기담당부서)		시·도 (승강기담당부서)		

210㎜×297㎜[백상지80g/㎡(재활용품)]